

행동강령 및 외부강의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한 2016년 하반기 외부강의등 신고제도 준수실태 점검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■ 실시 개요

- 점검기간 : 2016. 10. 18. ~ 2016. 10. 21. (4일간)
- 실시자 : 청렴행정부장 외 3명
- 실시근거
 - 임직원행동강령규정시행세칙 제24조, 제24조의2, 제35조
 - 외부강의등 신고제도 운영지침('16.3.31)
- 점검대상
 - 대상기간 : '16. 6. 1. ~ '16. 9. 30. (※ '16.5.31.이전 건은 既점검)
 - 대상건 : 외부강의등의 명목으로 신고된 건 및 미신고건
 - ※ 단, 신고제외 대상임이 명백한 건은 점검대상에서 제외
 - 요청기관이 국가·지자체인 경우 / 대가없이 실시한 경우(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건에 한함) / 내부활동인 경우
 - ※ 미신고건은 직원 출장내역, 휴가사용내역 등을 기초로 점검

■ 중점 점검사항

- 사전신고 의무 준수 여부
 - 사전신고 여부(미신고, 사후신고), 신고사항 일부누락 여부 등
- 강의료 등 사례금(대가)의 적정성
 - 상한액 준수 여부 및 출장비 부당수령 여부
- 복무처리의 적정성
 - 공사 업무의 연장 여부에 따른 연차사용 또는 출장처리의 적정성
- 기타 직무유착성 강의 등 부패발생 요인

■ 점검결과 요약

- 점검대상 중 신고대상은 총 9건으로 파악되었으며, 이 중 **사전신고 미준수건은 2건** (※ 단, 이 중 **1건**은 점검기간 중 **자진신고**)
- **9건 모두 “직접적 직무관련성”**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, 따라서 각 요청기관 기준에 따라 **지급된 대가는 적정**하였음
- 외부강의등의 행위가 공사의 업무수행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출장비 수령은 부적정한 바, 출장처리된 총 3건 중 **출장비 부적정 수령건은 1건**으로서 **해당금액 회수조치** 필요
- 공사의 직접적 업무수행으로 보기 어려운 강의등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실시함이 타당한 바, **2건은 공사의 업무수행이 아님에도 사장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 ‘출장’**으로 처리
- **점검대상 중 1건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의 건**으로서, 점검 결과 행동강령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상의 신고절차, 사례금 상한액 등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였음

■ 세부 점검결과 및 분석

1. 개요

- 강의등 유형
 - 강의 2건 / 심사·평가 5건 / 토론 1건 / 자문 1건
 - ※ 자문건(1건)의 경우 다수인 대상 또는 회의방식은 아님
- 신고유형
 - 사전신고 7건 / 사후신고(자진신고) 1건 / 미신고 1건
- 요청기관 유형
 - 총 9건 중 공공기관 8건, 민간단체(한국도시계획가협회) 1건
- 실시자 직급
 - 3급(관리자급) 이상 8명 / 4급 이하 1명 (→ 주로 상위직급자 실시)

2. 양호 사항

○ 직무유착관계 부재

- 신고대상 모두 주로 공공기관(또는 협회)으로부터 실시자 개인의 직무경험 및 지식에 의존하여 심의·강의 등을 요청받은 경우로서 공사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내지 부패발생 위험은 희박하다고 판단됨

○ 대가금액(사례금) 적정

- 총 9건 모두 '직무관련 외부강의등'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'요청기관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'에 따라 적정하게 대가가 지급됨

○ 월 실시 횟수·시간 제한 준수

- '16.3.31.부 지침 시행 이후 "월 3회 또는 6시간"으로 제한되는 바, 시행일 이후 실시된 9건 모두 위반사항 없음

○ 외부강의 신고 시스템(MIS) 도입(9/1) 후 신고항목 누락사례 감소

3. 지적 사항

○ 사전신고 불이행 (2건)

- 사전신고가 원칙이나, 총 9건 중 사후신고 1건, 미신고 1건

요청기관	건 명	신고일	실시일	사전신고 여부
○○○○공사	무기계약직 업무직 채용 서류전형 심사	16.10.21	16.08.09	사후신고 (자진신고)
◇◇◇◇◇진흥원	건설신기술 지정 심사	-	16.08.25	미신고

※ 단, 이중 1건은 점검기간(10/18~10/21) 중 적발 전 자진신고

○ 출장비 수령 부적정 (1건)

- 공사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근무시간 중 강의 등은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아야 함이 타당하나('16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),
- 아래 1건은 공사 업무수행이 아님에도 출장비 수령

요청기관	건 명	실시일	업무수행	출장비 수령액
○○○○공사	무기계약직 업무직 채용 서류전형 심사	16.08.09	×	10,000원

○ 복무처리 부적정 (3건)

<복무처리 현황>

계	휴일실시	연차사용	출장처리	근거없음
9건	-	5건	3건(2건 부적정)	1건(부적정)

- 총 9건 모두 “공사 업무수행”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건으로서, 이 중 연차유급휴가 사용 5건 및 사장승인에 따른 출장처리 1건은 복무처리가 적정하였으나,
- 나머지 3건 중 2건은 사장승인 없이 부서장 승인만으로 출장처리하였고, 1건은 외부장의 신고를 하였음에도 복무처리는 별도 조치하지 않아 부적정

■ 조치계획

1. “사전신고 위반건” 에 대한 조치

사후신고(자진신고) 1건, 미신고 1건의 경우 “사전신고 의무”를 준수하지 않았으나, ①직무유착성 부패발생 위험이 희박한 점 ②해당 요청기관이 공공기관으로서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점(고의성 부재) ③과거 위반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,

- ▶▶ 해당자(2명)에 대해 “현지시정” 조치하고, 향후 사전신고 의무 준수토록 개별 통보, 안내 및 교육 (위반사실 통보, 관련법령·기준 숙지)

2. “출장비 수령 부적정건” 에 대한 조치

공사의 직접적 업무수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임에도 출장비를 수령한 1건에 대해서는 ①상급자의 출장승인을 얻어 실시된 점, ②상습성은 발견되지 않은 점(1회성), ③'16년 경기도 감사 및 '16년 상반기 자체 점검 결과와 동일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,

- ▶▶ 해당자(1명)으로부터 “출장비 부적정 수령액(1만원)회수” 조치

3. “복무처리 부적정건” 에 대한 조치

공사의 직접적 업무수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임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 또는 사장승인 출장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시한 외부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 공제 필요

▶▶ 해당자(3명) 외부활동 시간에 상응하는 “연차유급휴가(반일)” 공제 조치하고, 향후 복무기준 준수토록 기준 안내 및 교육 실시

향후 계획

- 금번 점검결과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 후 결과 보고(11월)
- 청탁금지법 시행(9/28)에 따라 변경된 외부강의 신고제도 홍보
 - 청탁금지법, 개정 행동강령 및 외부강의 지침 내용 및 사례 전파
 - 외부강의 요청이 상대적으로 많은 ‘상위직급자’ 교육참석 활성화 방안 모색

(끝)